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 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8. 29.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3년 8월 11일

나.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3년 8월 24일

라. 상정일자: 제24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3. 8. 28.)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복지국장 강현숙)

가. 제안이유

○ 출산 및 양육지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지속적인 사회의 발전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변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내용 삭제(현행 조례 제3조~제8조)
- 출산 및 양육지원의 목적, 관련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추가(안 제1조~제3조)
- 출산 및 양육지원 사업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 조항 신설(안 제4조, 제4조의2)
- 민간 위탁 및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5조~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경진)

○ 본 개정조례안은

- 출산 및 양육지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지속적인 사회의 발전과 영등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O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정부 시책인 첫만남이용권 사업 시행 이후, 우리 구의 유사 사업인 출산장려금 지원이 중지됨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급 관련 조항들을 삭제하고 출산 및 양육지원 전반에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명을 기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개정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였고
- 안 제4조에서는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결혼·임신·출산·양육 등의 지원사업과, 편의시설 설치 및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런하였으며,
- 안 제4조의2에서는 산후조리비용으로 정액 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의 위탁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중복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검토 결과

-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까지 떨어졌으며, 2022년 출생아 수는 24만 9,000명으로 전년(26만 500명) 대비 1만 1,500명(-4.4%) 감소하였고,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줄곧 합계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우리나라뿐임.

- 또한, 결혼이 늦어짐에 따라 첫 아이 출산 평균연령이 높아져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원만한 건강 회복을 위한 산후조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한 것은 적합한 것으로 보임.
- 우리 구 자체 사업 중 유사 사업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지원'을 시행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의 지원대상이 거주요건 충족시에도 소득기준 등 일부 제한사항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의 주요 사업인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거주요건 충족 시 모든 산모에게 지원하여 출산가정에 보편적인 복지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 됨.
- 또한 출산·양육에 따른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추진한 첫만남이용권 사업의 시행으로 우리 구의 유사 지원 사업인 출산장려금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법적 적합성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출산장려금 관련 조항들을 삭제하였고,
- 이와 함께 초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고자 출산 및 양육지원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 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208 호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다자녀 가족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자녀 가족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안 제13조)

나. 다자녀 가족 혜택 대상 막내 나이를 13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변경(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2) 인권영향평가: 인권 침해 가능성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의 개선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2023. 7. 6.~7. 26./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 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 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차목 중 "셋"을 "둘"로, "13세"를 "18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중	
해당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2
당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	
가. ~ 자. (생 략)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 자녀가 <u>셋</u> 이상인 가족(자	차 <u>둘</u>
녀 중 한 명 이상이 <u>13세</u>	<u>1</u> 8세 -
이하여야 한다): 50퍼센트	
카. ~ 파. (생 략)	카. ~ 파.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